

문 의	특허심판원 심판11부	심판장 최규완 심판관 이한규	042-481-5813 042-481-5841
 	2018년 8월 28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인터넷매체는 8월 27일(월)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		

화상디자인, 창작성이 높아야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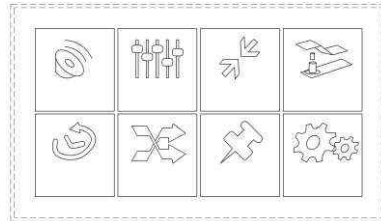
- ‘화상디자인’ 심판청구 중 창작성이 낮은 이유로 기각 사례 최다 -
-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에 사용되는 화상디자인에 대한 심판청구 중 창작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
- 특허심판원(원장 고준호)에 따르면, 최근 5년간 화상디자인 관련 심판청구 건수는 70건이며, 이 중 64건이 처리(종결)된 것으로 조사됐다.
 - 심판 청구가 기각된 42건 중 41건은 모두 그 디자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,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, 나머지 1건은 기존 디자인과 유사하여 기각됐다.
 - 반면, 디자인의 창작성을 인정하여 심사국으로 환송한 사건은 15건으로 나타났다.
-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등록되어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알려진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아야 하며, 그 디자인과 관련된 업계에 종사하는 디자이너 또는 사람들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수준의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.

화상디자인

화상디자인은 스마트폰,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 화면에 주로 사용된다. 화면에서 메뉴, 그림, 아이콘 등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(GUI)를 선택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. 화상디자인은 스마트폰 등 기존 웨어러블 기기에서 스마트 생활가전, 자율주행차, 스마트공장 등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.



화상디자인이 표시된
택배보관시스템용 단말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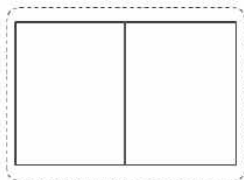
화상디자인이 표시된
컴퓨터모니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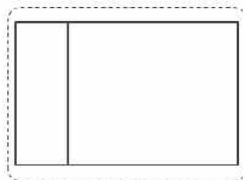
화상디자인이 표시된
디스플레이패널

□ 창작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기각되는 유형을 살펴보면,

- 첫째, TV, 인터넷, 간행물 등을 통하여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화면의 공간 분할과 메뉴 구성방식, 아이콘, 그래픽 이미지 등의 형상, 모양 및 색채, 그리고 이들을 결합하여 제시한 경우이며,



흔한 화면 프레임 분할의 예



+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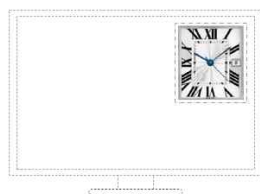
⇒



공지디자인

출원디자인

- 둘째,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등 업계에서 그 디자인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의 수준에서 판단할 때, 흔한 창작 수법이나 표현 방법으로 변경하거나 조합한 경우이다.



공지디자인(손목시계) →
출원디자인(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모니터)



공지디자인(TV 화면) →
출원디자인(화상디자인이 표시된 게임기)

- 특허심판원 최규완 디자인 심판장은, “비록 화상디자인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점차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지만, 화상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스마트 기기의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(GUI) 방식을 고도화하는 등 창작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
※ 붙임: 화상디자인 심판청구 현황 및 개요

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특허심판원 제11심판부
심판관 이한규(☎ 042-481-5841)에게 연락 바랍니다.

붙임1

최근 5년간('13~'17) 화상디자인 심판 일반 현황

1. 화상디자인 심판청구 현황

(단위 : 건)

구분	2013	2014	2015	2016	2017	계
화상디자인 심판청구	7	19	19	19	6	70

2. 화상디자인 심결 현황

(단위 : 건)

구분	2013	2014	2015	2016	2017	계
청구인용	0	2	1	4	8	15
청구기각	0	4	12	6	20	42
기타	0	5	1	1	0	7
계	0	11	14	11	28	64

주) 1. 심결은 심판청구 기간부터 평균 8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당해 연도에 전부 처리 불가
2. 기타는 보정각하, 결정각하, 무효처분 등을 포함

3. 화상디자인 인용 및 기각 사유

(단위 : 건)

구분		2013	2014	2015	2016	2017	계
청구인용 (취소환송)	신규성	0	0	0	0	1	1
	공업상 이용가능성	0	1		1	0	2
	창작성	0	1	1	3	7	12
청구기각	신규성	0	0	0	0	1	1
	창작성	0	4	12	6	19	41
기타	보정각하	0	0	1	1	0	2
	결정각하	0	4	0	0	0	4
	무효처분	0	1	0	0	0	1
계		0	11	14	11	28	64

1. 화상디자인의 정의

-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모양·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(움직이는 화상을 포함한다)을 말하며, 표시부는 문자 또는 이미지 등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는 물리적인 화면을 말한다.

2. 화상디자인의 구성

- 선, 도형, 색, 아이콘, 픽토그램, 캐릭터, 문자를 기본 요소로 하고 있으며, 이들 요소간의 조합이 활용되기도 한다.
- 또한, 이러한 요소들의 배치, 조합, 시간적, 공간적 이동을 나타내는 GUI, 버튼, 윈도우, 스크롤바 등의 요소도 포함한다.

3. 화상디자인의 보호범위

-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(GUI) : 인터넷 홈페이지 등 Web GUI, 한글프로그램 등 응용소프트웨어 GUI, 스마트폰, 웨어러블기기 등에 구현되는 모바일 GUI, 냉장고, TV, 네비게이션 등에 구현되는 정보가전 GUI 등
- 아이콘(icon) : 응용소프트웨어 아이콘, 단품이나 Set로서의 도구 아이콘, GUI의 구성요소로서 GUI 아이콘 등
- 그래픽 이미지(Graphic Images) : 화면보호기, 캐릭터, 아바타를 구성하는 아이템 set, 이모티콘, 3D애니메이션 등

붙임3 화상디자인 등록사례



화상디자인이 표시된
택배보관시스템용 단말기
(등록번호 : 30-0882910,
출원인 : 중앙제어시스템(주))



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패널
(등록번호 : 30-0810950,
출원인 : 현대중공업(주)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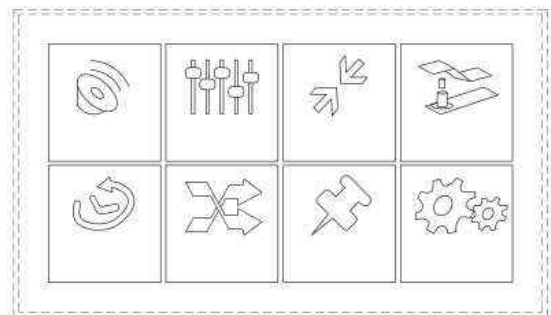
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패널
(등록번호 : 30-0799311,
출원인 : 삼성전자(주))



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스마트폰
(등록번호 : 30-0916541,
출원인 : ㈜가린시스템)



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모니터
(등록번호 : 30-0900506,
출원인 : 에릭스엘지엔터프라이즈(주))



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패널
(등록번호 : 30-0891976,
출원인 : 트루직(주))